

202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(도시철도국) 소관  
제 1 회 추 가 경 정 예 산 안

검 토 보 고

I. 추경예산안 개요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나. 의안번호 : 제3166호

다. 제출일자 : 2022년 3월 17일

라. 회부일자 : 2022년 3월 23일

마. 추경예산 편성 사유

- 민생경제 회복, 방역체계 강화 등을 위해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

## 2. 추경예산안 총괄

### □ 세입예산안

- 2022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(도시철도국)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 8,755억 32백만원 대비 1,218억 81백만원(6.5%)이 증가한 1조 9,974억 13백만원으로 편성됨
  -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7,145억 32백만원 대비 1,218억 81백만원(7.1%) 증가한 1조 8,364억 13백만원으로 편성
  -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0억원으로 예산변동 없음
  -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,310억원으로 예산변동 없음

### ※ 도시기반시설본부(도시철도국) 세입예산안

(단위 : 백만원)

회 계	예 산 액			
	추경예산(안)	기정예산	증 감	증감률(%)
계	1,997,413	1,875,532	121,881	6.5
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	1,836,413	1,714,532	121,881	7.1
교통사업특별회계	30,000	30,000	-	0.0
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	131,000	131,000	-	0.0

## □ 세출예산안

- 2022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(도시철도국)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조 7,181억 25백만원 대비 1,387억 63백만원(8.1%)이 증가한 1조 8,568억 88백만원이 편성됨
  -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,616억 35백만원 대비 1,200억 1백만원 (33.2%)이 증가한 4,816억 36백만원으로 편성
  -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2,060억 4백만원 대비 187억 62백만원(1.6%)이 증가한 1조 2,247억 66백만원으로 편성
  -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4억 99백만원으로 예산변동 없음
  -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,329억 87백만원으로 예산변동 없음

### ※ 도시기반시설본부(도시철도국) 세출예산안

(단위 : 백만원)

회 계	예 산 액			
	추경예산(안)	기정예산	증 감	증감률
계	1,856,888	1,718,125	138,763	8.1
일 반 회 계	481,636	361,635	120,001	33.2
특 별 회 계	1,375,252	1,356,490	18,762	1.4
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	1,224,766	1,206,004	18,762	1.6
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	17,499	17,499	-	0.0
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	132,987	132,987	-	0.0

## II. 회계별 세입 · 세출예산안

### 1. 일반회계

가. 세입예산안 : 별도 계상내역 없음

나. 세출예산안

□ 기정예산 3,616억 35백만원 대비 1,200억 1백만원(33.2%)이 증가한 4,816억 3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

〈 증액 내역 〉 1건, 1,200억 1백만원

-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전출금 1,200억 1백만원

〈 감액 내역 〉 없음

#### ※ 일반회계 세출예산안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추경예산액(A)	기정예산액(B)	비교증감(A-B)	증감률(%)
총 계	481,636	361,635	120,001	33.2%
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전출금	481,636	361,635	120,001	33.2%

### 2.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

가. 세입예산안

□ 기정예산 1조 7,145억 32백만원 대비 1,218억 81백만원(7.1%)이 증가한 1조 8,364억 1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

〈 증액 내역 〉 2건, 1,218억 81백만원

- 국고보조금 18억 80백만원
- 기타회계전입금 1,200억 1백만원

〈 감액 내역 〉 없음

※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추경예산액(A)	기정예산액(B)	비교증감(A-B)	증감률(%)
총 계	1,836,413	1,714,532	121,881	7.1%
국 고 보 조 금	44,577	42,697	1,880	4.4%
기 타 회 계 전 입 금	481,636	361,635	120,001	33.2%

나. 세출예산안

□ 기정예산 1조 2,060억 4백만원 대비 187억 62백만원(1.6%)이 증가한 1조 2,247억 66백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

〈 증액 내역 〉 2건, 187억 62백만원

- 진접선(4호선연장)차량기지 건설 120억 62백만원
-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67억원

〈 감액 내역 〉 없음

※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추경예산액(A)	기정예산액(B)	비교증감 (A-B)	증감률 (%)
총 계	(×44,577) 1,224,766	(×42,697) 1,206,004	(×1,880) 18,762	(×4.4%) 1.6%
진접선(4호선연장)차량 기 지 건설	992	872	120	13.8%
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	(×8,680) 21,700	(×6,800) 15,000	(×1,880) 6,700	(×27.6%) 44.7%

### 3. 교통사업특별회계

가. 세입예산안 : 별도 계상내역 없음

나. 세출예산안 : 별도 계상내역 없음

### 4.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

가. 세입예산안 : 별도 계상내역 없음

나. 세출예산안 : 별도 계상내역 없음

### Ⅲ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#### 1. 총괄

- 이번 도시기반시설본부(도시철도국)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

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1조 8,755억 32백만원 대비 1,218억 81백만원(6.5%)이 증가한 1조 9,974억 13백만원이며  
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1조 7,181억 25백만원 대비 1,387억 63백만원(8.1%)이 증가한 1조 8,568억 88백만원임

#### 2. 회계별 검토의견

##### < 일반회계 >

-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의 경우 변동이 없음
-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3,616억 35백만원 대비 1,200억 1백만원(33.2%)이 증가한 4,816억 36백만원이며, 주요 변동내용을 살펴보면
  -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전출금 1,200억 1백만원임

##### <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>

-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1조

- 7,145억 32백만원 대비 1,218억 81백만원(7.1%)이 증가한 1조 8,364억 13백만원이며, 주요 변동내역을 살펴보면
- 국고보조금(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) 18억 80백만원, 기타회계전입금 1,200억 1백만원임
  -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1조 2,060억 4백만원 대비 187억 62백만원(2.1%)이 증가한 1조 2,247억 66백만원이고, 주요 변동내용을 살펴보면
    - 진접선(4호선연장)차량기지 건설 120억 62백만원,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67억원임

#### < 교통사업특별회계 >

-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모두 변동이 없음

#### <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>

-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모두 변동이 없음



### 3. 주요 단위사업별 검토의견

#### ■ 일반회계 전입금 및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전출금(2022년 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p.35, p.239)

- 금번 도시철도국 소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코  
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승객감소에 따른 운송적자 누적을 해소하  
고 장기간의 요금 동결로 재정난에 처한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재정  
지원하며,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등 도시철도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 
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
#### ※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·세출 증감내역

회계별	금회추경내역 (단위:백만원)			
	세입 증감액		세출 증감액	
	합 계	121,881	합 계	121,881
도시철도 건설사업비 특별회계	○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 회계 수입	1,880	○ 도시기반시설본부	18,762
	- 국고보조금 :	1,880	- 진접선(4호선연장) 차량기지 건설	12,062
	○ 일반회계 전입금	120,001	-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	6,700
			○ 도시교통실	103,119
			- 지하철역 승강편의 시설 설치	1,108
			-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	1,750
			- 지하철 9호선 2~3 단계구간 위탁운영관리	261
			- 서울교통공사 서비스 개선	100,000
일반회계			○ 도시기반시설본부 - 도시철도건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	120,001

- 주요 세출 증가 내용을 살펴보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운송적자 해소 1,000억원,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17억 50백만원, 진접선 차량기지 및 지하철 9호선 건설 187억 62백만원 등 총 1,218억 81백만원의 세출을 증액 편성하였으며

세출 증가에 따라 세입은 국고보조금 18억 80백만원과 함께 일반회계 전입금 1,200억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였음

- 서울교통공사 재정과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재무여건 상 일반회계를 활용하여 서울교통공사를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여짐

다만,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<sup>1)</sup>에 따라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것으로 '22년도 예산편성시' 22년도 지방채원리금 1조 720억 67백만원(도시기반시설본부 9,634억 21백만원, 도시교통실 1,086억 46백만원) 상환과 사업비 확보 등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3,616억 35백만원을 편성한 바 있고, 금번 추경에서 1,200억 1백만원(33.2%)을 증액하고자 하는 바 반복적인 일반회계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임

---

1) 지방재정법 제9조(회계의 구분)

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## ■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(사업설명서 p.777)

- 동 사업은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에서 고덕강일1지구까지 연장 4.1 km, 정거장 4개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전동차 구입 선금을 지급하고자 기정예산 150억원에서 67억원(44.6%)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

### ※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사업 추경안

(단위 : 백만원)

사 업 명	추경안	기정예산	증 감	증감율(%)
계	21,700	15,000	6,700	44.6
시 설 비	20,500	13,800	6,700	48.6
감 리 비	1,000	1,000	-	-
시설부대비	200	200	-	-

- 서울시는 도시철도 9호선 차내혼잡 문제 개선을 위해 전동차를 증편<sup>2)</sup>하고자 전동차 구매공고를 추진하였으나 계속되는 무응찰 유찰<sup>3)</sup>로 전동차 물량과 단가를 조정<sup>4)</sup>해 기존 도시철도 9호선 구간 증편 30칸과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구간 18칸을 포함하여 총 48칸에 대해 '20년 12월에 전동차 구매 계약을 체결<sup>5)</sup>하였으며, '21년 11월 계약업체의 요청<sup>6)</sup>에 따라 물가 변동을 고려해 계약금액을 조정<sup>7)</sup>한 바 있음

2) 9호선 혼잡도 개선을 위한 전동차 증편 추진계획(도시철도과-9814호, 2019.9.4.)

3) '20년 3월~8월 : 4회 전동차 구매공고 추진 → 모두 무응찰 유찰

4) 9호선 혼잡도 개선을 위한 전동차 증편 변경계획(도시철도과-11941호, 2020.10.19.)

5)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48칸 조달 구매

- 계약기간 : '20.12.24 ~ '23.12.24

- 계약금액 / 업체 : 75,247백만원 / 현대로템(주)

6)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(행정안전부예규 제 197호) 제1장 제6절 5. 계약금액의 조정

가.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이 지나고 “4-가”에 따라 산출한 K가 100분의 3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.

- 동 사업은 9호선 4단계 구간 18칸에 대한 계약금 294억 16백만원 중 선금 지급분 100억원(34.0%) 마련을 위해 본예산 33억원 이외 추가로 67억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9호선의 혼잡문제, 전동차 제작, 형식승인, 완성차 검사, 시운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추경안의 편성은 필요하다 할 것임

다만, 향후 물가 변동 여건을 고려해 선금 이후 잔여 금액에 대한 지급시기와 횟수 등에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, 최근 3년간 동 사업의 예산 이월액과 비율이 높음에도 추경예산을 편성한 점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예산 집행률 제고와 철저한 전동차 납품 관리를 통해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

※ 도시철도 9호선4단계 최근3년간 예산집행 및 이월현황

(단위:백만원)

9호선 4단계	본예산		예산현액 (a)	집행액 (b)	차년 이월액(c)	이월율 (c/a)	불용액 (d=a-b-c)	불용율 (d/a)
	당초예산	최종예산						
2019	13,341	9,220	882	580	300	34.0%	2	0.3%
2020	14,613	8,713	9,013	231	4,763	52.8%	4,018	44.6%
2021	13,250	13,250	18,013	4,683	13,159	73.0%	171	0.9%
2022	15,000	15,000	28,159	-	-	-	-	-

주) '21 및 '22년 예산 및 이월현황은 결산·추경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

7) 별내선 및 9호선 자동차 구매 관련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(도시철도설비부-10588호, 2021.11.18.)

구 분	1회	2회
기준시점	'20.12.23.	'21.3.25
조정시점	'21 .3.25	'21.6.24
조 정 률	3.32%	3.73%
조정금액	1,934백만원	2,103백만원
총 계약금액	77,181백만원	79,284백만원

※ 총 4,037백만원 증액 : 최초 계약금 75,247백만원 → 79,284백만원(30칸 49,868백만원, 18칸 29,416백만원)

## ■ 진접선(4호선연장) 차량기지 건설(사업설명서 p.782)

- 동 사업은 동북부지역 개발 및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해 창동 차량기지를 남양주시 진접으로 이전하여 광역 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871억 62백만원에서 120억 62백만원<sup>8)</sup>(13.8%)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

### ※ 진접선(4호선 연장) 차량기지 건설사업 추경안

(단위 : 백만원)

사 업 명	추경안	기정예산	증 감	증감율(%)
계	99,224	99,224	12,062	13.8
시 설 비	55,698	43,636	12,062	27.6
감 리 비	1,962	1,962	-	-
시설부대비	62	62	-	-
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	41,502	41,502	-	-

- 주요 증액사유인 한국전력(이하 '한전') 수전 시설분납금 66억원은 대규모 전력소비가 필요한 동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한전과 협의결과<sup>9)</sup> 수전 시설 설치에 약 220억원이 소요됨에 따라 한전 「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<sup>10)</sup>」에 의거 전체 시설부담금의 30%를 사전납부하고자 하는 비용이며, 관급자재비 54억 62백만원은 철도종합시험

8) 한국전력 수전 시설분납금 66억원, 관급자재비 54억 62백만원

9) 진접선 차량기지 전력수전예정 통지 검토결과 알림 : 한국전력 경기북(고객)-109호('22.1.11)

○ 내촌 S/S에서 전용선로로 직접공급가능(소요예산 : 21,900백만원)

10)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(22.3.1.) 제74조

②항 1호 전기사용신청 고객은 희망에 따라 전체 시설부담금의 30%를 공급준비 착수전에 납부하고, 잔여 시설부담금은 수급개시예정일 전까지 3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.<이하생략>

운영 지침 개정<sup>11)</sup>과 창동차량기지 철거 기간 및 종합시험운영 기간의 중복정도<sup>12)</sup>를 고려하여 공사후 종합시험운영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건축분야 공사기간을 약 8개월 가량 단축함<sup>13)</sup>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를 확보하고자 하는 비용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필요하다 할 것임

- 다만, 종합시험운영 기간을 마련하고자 공사기간을 8개월이나 단축하는 것은 공사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, 무리한 일정조정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바 향후 철저한 공사관리와 함께 안전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, 공기단축이 예상됨에도 소요되는 관급자재비를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임

---

11) '19.4.24 철도종합시험운영지침 개정으로 소요기간 증가(당초 6개월 → 10개월)

12) 진접차량기지 종합시험운영이 창동차량기지 철거공사보다 선행되어야 하나 공정상 약 4개월이 중복

13) 진접선[4호선 연장] 차량기지 2공구 건설공사 건축분야 공사기간 단축계획 보고(도시철도건축부